

KWDI

해외통신

2018. 1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독일 GERMANY



독일인 절반 이상, “미투 1년, 아직 달라진 것은 없다.”

채혜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독일 통신원

▶ 할리우드 영화 제작자 ‘하비 웨인스타인’에 의한 성폭력에 대해 수십 건의 피해 경험 고발이 이어진 ‘미투#MeToo’ 운동이 벌어진 지 1년이 지났다. ‘미투’ 운동은 영화계 외에도 다른 영역으로 이어졌으며, 지금도 직장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의 피해 경험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미투’ 운동 1년, 직장과 사적 영역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리고 그 변화는 과연 긍정적인가?

▶ 이에 대해 독일 언론 ‘슈피겔SPIEGEL’은 ‘미투’ 1년 이후 무엇이 변화했는지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독일 여론조사기관 ‘Civey’와 함께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9일까지 5,000명 이상의 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독일 언론은 ‘미투 논의#MeToo-Debatte’가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독자들에게 물었다. 독일에서는 지난 2월, 영화 및 미디어 업계에 종사하는 500명 이상의 여성으로 구성된 ‘Pro Quote Film’ 총회가 열렸으며 이들은 ‘공적인 계약과 보조금 지원’, ‘공영방송과 영화 기금 관련 기관, 영화학교 등 여러 기관과 위원회’, ‘공공방송사 및 관리직책’ 등의 영역에 50% 여성 할당제를 주장하고 있다. 독일에서 이처럼 ‘미투’운동이 영화 및 미디어 영역을 제외하고는 눈에 띄게 일어나지 않았다.

▶ ‘슈피겔’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독일 독자들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토대로 답했다. 그 결과 독일인의 2/3가 ‘미투’에 대한 토론이 이뤄지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자 절반 이상이 “미투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예를 들어 한 여성 독자는 “내 전문 분야인 정신과학 분야에서는 미투 운동으로 인한 변화가 거의 없다.”며 “성차별, 그중에서도 여성의 능력을 부정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답했다. 슈피겔은 이에 대해 독일 노동 시장 내 높은 경쟁 풍토 때문에 특히 동일 직급의 동료 사이에서 성차별이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 긍정적인 답변도 있다. 컨설턴트 회사 리더로 일하고 있는 한 여성 독자는 “미투 운동과 관련해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 리더십 위치에 있는 남성들의 행동”이라고 전했다. 이 독자는 미투 운동 이후, 리더십 직군의 남성은 여성 직원과의 개별적인 대화를 피하고 있으며 미팅을 가질 때도 유리로 된 공간이라 밖에서도 안이 다 보이는 곳을 선호하고 있다고 전했다.

참고자료

- 독일 슈피겔 기사
<http://www.spiegel.de/karriere/metoo-fuer-die-meisten-deutschen-hat-die-debatte-wenig-bewirkt-zeigt-eine-spiegel-umfrage-a-1231684.html>
(접속일자, 2018년 10월 15일)

설문조사를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투' 운동이 사적 영역보다는 직장 영역에 좀 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투 운동이 직장에서의 성희롱을 줄였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묻는 항목에, 응답자의 17.4%(‘물론이다’ 2.9%, ‘그렇다’ 14.5%)에 긍정적으로 답했고, 응답자의 절반인 50.4%(‘아니다’ 32.4%, ‘절대 아니다’ 18%)는 부정적으로 답했다. 이와 달리 사적 영역의 성희롱이 줄었는가를 묻는 항목에는 응답자의 56.2%(‘아니다’ 34.7%, ‘절대 아니다’ 21.5%)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긍정적인 답변은 10.7%(‘물론이다’ 1.8%, ‘그렇다’ 8.9%)에 그쳤다(‘슈피겔’ 보도를 보면 ‘사적 영역에서의 성희롱’에 대해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직장 영역이 아닌 개인적인 일상 영역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슈피겔’ 보도에 따르면, ‘미투’ 토론에 대해 남녀가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보다 남성이 ‘미투’ 문제에 대해 너무 많이 논의되고 있다.’고 답한 것이다. 그러나 ‘미투’ 운동이 사회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묻는 의견에는 남녀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오히려 큰 의견 차이를 보인 것은 성별이 아니라 ‘나이’였다. 18세에서 39세 사이의 젊은 사람들은 더 자주 ‘미투’ 논의를 이끌어갔으며, 이들은 ‘미투’ 이슈에 대한 토론으로 개선된 문제는 없다는 의견이 강했다.

예를 들어 ‘미투’ 토론이 사적 영역에서의 성희롱을 줄였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묻는 항목에, 18세에서 29세 사이 연령 그룹은 6.9%만이 ‘그렇다’고 답했고,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답변이 63.9%(‘아니다’ 35.3%, ‘절대 아니다’ 28.6%)에 달했다. ‘모르겠다’는 답변은 27%였다. 반면 65세 이상 연령 그룹은 ‘모르겠다’는 답변이 36.6%로 가장 많았고, 사적 영역 내 성희롱이 줄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은 51.5%(‘그렇지 않다’ 35.1%, ‘전혀 그렇지 않다’ 16.4%)였다. ‘미투’ 토론이 사적 영역에서의 성희롱을 줄였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한 65세 이상 독자는 11.9%다.

이어 ‘미투’로 인해 직장 내 성희롱이 줄었다고 답한 65세 이상 독자는 10.2%였으며, 51.5%(‘아니다’ 35.1%, ‘절대 아니다’ 16.4%)의 응답자는 ‘미투’ 운동이 직장 성희롱을 줄이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와 달리 18세에서 29세 사이 독자의 경우, 응답자의 16.3%가 “성희롱이 줄었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53.7%(‘아니다’ 29.6%, ‘절대 아니다’ 24.1%)는 직장 내 성희롱이 줄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편 ‘슈피겔’은 독자 개인 경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받았는데, 대부분의 여성 독자들이 ‘미투’ 운동 이후 여전히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전해왔다. 한 여성 독자는 “남자들은 ‘미투’ 운동 이후에도 계속 부적절한 태도를 취하며 ‘이 정도는 괜찮지?’와 같은 문제 인식 없는 질문을 던진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성 독자는 “예를 들어 보고서를 쓸 때 미투 이슈를 들먹이며 과장해서 작성하는 등 ‘미투 운동’을 웃음거리로 삼아 의식적으로 여성을 괴롭히는 일이 많아졌다.”고 전했다.

여성 난민들의 경제적 통합에 대한 보고서 발표

곽서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올해 8월 30일, OECD는 유럽 내 여성 난민들이 정착 국가(host country) 경제에 어느 정도 통합(integration)되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공식 발표했다. 보고서는 유럽 지역 내 증가하는 난민, 그 중에서도 여성 난민들의 경제적 기회나 취업 관련 문제에 대한 조사가 그동안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기존에 발표되었던 여러 사회경제적 통계 데이터 및 자료 등을 바탕으로 유럽 내 여성 난민들의 경제적 참여 수준과 통합 현황을 개괄적으로 소개하였다.¹⁾

1) OECD 보고서는 유럽 전체 지역(EU, Non-EU 모두 포함)을 주제로 다루고 있으나, 데이터 유무 여부나 서술 내용 문맥에 따라 EU 지역이라고 한정짓는 부분도 있음. 이에 따라 본 원고는 '유럽 지역' 및 'EU 지역'이라고 구분하여 기술함.

최근 몇 년 간 난민 유입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유럽 국가들에게 난민 이슈는 점점 중요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2014년 기준 EU 회원국 내에만 약 80만 명 이상의 여성 난민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2017년 기간 동안에는 유럽 지역에 국제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난민 외 망명신청자 포함) 약 50만 명이 추가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최근 몇 년 간 유럽 내 정착한 여성 난민들 중 얼마나 현지에서 일자리를 구했을까? 그렇지 못한 여성 난민들은 어떤 고충을 겪고 있을까?

OECD 보고서에 따르면 EU 지역 내 난민 여성의 약 45%만이 취업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른 유형의 여성 이민자나 남성 난민에 비해 훨씬 낮은 수치이다. 또한 여성 난민과 남성 난민의 취업률 성 격차는 자녀 양육 시기(약 25-35세)에 가장 크게 벌어지는데, 25-35세 난민 남성의 취업률은 60% 초반인 반면, 난민 여성의 경우 40% 초반에 그쳐 그 격차가 약 22%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취업한 여성 난민의 약 42%가 시간제(part-time)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non-EU 이민자 여성(36%), 정착국가 현지 여성(27%)에 비해 높은 수치이다. 약 40%의 고등교육(tertiary education)을 받은 여성 난민들이 본인이 가진 역량이나 자격보다 낮은 조건의 인력을 원하는 자리에(over-qualified)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²⁾ 실업률에서도 난민 여성의 경우 20%를 넘는 수준으로, 비교했던 총 6개의 집단(난민 여성 및 남성, 난민 아닌 non-EU 이민자 남성 및 여성, 정착국가 현지 남성 및 여성)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본 단락의 수치들은 2014년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함.

여성 난민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로 지적된 것은 바로 정착국가 언어 구사 수준이었다. 데이터 수집이 가능했던 유럽 내 OECD 회원국들 중, 프랑스에서만 여성 난민의 현지 언어 구사능력이 기본이거나 아예 없는 비율이 남성 난민보다 약간 높고,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전부 남성 난민이 더 높은 언어구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예: 벨기에의 경우 남성 약 25-30% 사이인 반면 여성 35-40%). 영어에서도 성별 격차가 나타났는데, 유럽 국가에 초기 정착하는 시기 약 43%의 여성 난민이 영어를 전혀 모른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남성 난민 31%이라는 수치에 비해 비교적 높다고 볼 수 있다.³⁾

3) 본 단락의 수치들은 2014년 집계 기준임.

참고자료

- Liebig, T. and K. Tronstad(2018), "Triple Disadvantage? : A first overview of the integration of refugee women",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216,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3f3a9612-enl> (접속일자, 2018년 10월 29일)

또한, 난민 여성은 초기에 정착했을 때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정착국가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난민 남성보다 많았다. 그 이유는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난민 가족들은 대개 남성이 먼저 정착한 뒤 여성이 난민 가족 이주자로서 늦게 오는데, 배우자가 취업 관련 오리엔테이션이나 관계당국의 지원 프로그램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다시 들을 수 없다는 제약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로써 난민 여성들이 초기 취업관련 정보 획득이나 지원을 받는데 있어 난민 남성들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둘째, 정착국가의 난민 사회통합 지원 정책은 대부분 사회보조금(social benefits) 수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배우자를 따라 뒤늦게 온 여성은 사회보조금 수령자가 아니다보니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셋째, 정착하고 얼마 되지 않아 난민 여성들이 임신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초기 정착 안내 프로그램 참여율이 낮다.

이번 OECD 보고서에서는 여성 난민들은 남성 난민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경제적 참여 기회를 갖게 되기까지 많은 걸림돌을 마주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물론 유럽이라는 지리적 범위가 매우 방대하고, 국가마다 난민 수용 정도나 경제적 상황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에게 적용 가능한 난민 정책은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난민 수용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난민의 안정적인 사회·경제적 통합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유럽 국가들이 난민, 특히 그 중에서도 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민 여성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어떤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온타리오주, 안전한 교실지원법(Safe and Support Classrooms Act, Bill 48)발의
- 교사에 의한 학생 성폭력 피해 범위 확대, 가해 교사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중심으로

김양숙 캐나다 토론토대학 사회학 박사과정

- 앞으로 온타리오Ontario 주에서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성폭력을 가할 경우 해당 교사의 교원 면허가 자동으로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25일 온타리오 주 교육부는 안전한 교실 지원 법 Safe and Support Classrooms Act, Bill 48을 발의하면서 성폭력 가해 교사를 징계할 수 있는 가해 행위의 범위와 징계 수위를 한층 강화 할 것임을 발표했다.
- 교사에 의한 교내 성폭력을 규율하는 법률인 학생 보호법Protecting Students Acts은 2016년 당시 자유당 정부에서 입안된 바 있으나 구멍이 많은 법률로 그간 줄기찬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왜냐하면 해당 법률은 교사 면허를 무조건 취소해야 할 성폭력 행위를 성교intercourse, 마스터베이션, 아동 포르노, 성기 접촉으로 매우 협소하게 특정하고 있어, 학생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도 가해 교사들이 교직에 머물며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는데 일조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 실제로 올해 초 토론토 스타Toronto Star의 보도에 의하면 2012년 이후 온타리오에서 교사가 성범죄를 저지른 후 징계 후 다시 교직에 복귀한 사례가 27건에 달하는데, 2014년 언론에 크게 보도되며 여론의 공분을 산 리처드 버클리Richard Buckley 사건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온타리오의 한 고등학교 교사인 리처드 버클리는 2008년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던 동료 교직원을 성희롱 및 스토킹 하였고 2009년에는 성희롱으로 법정에서 유죄판결 까지 받았으나 집행유예 12개월로 풀려났고, 몇 개월의 교원 면허 정지 기간이 끝나자 새로운 고등학교에서 교편을 또다시 잡기 시작했다. 이후 버클리가 가르치던 과목에 흥미를 보이던 여학생이 페이스북을 통해 그에게 접촉을 시작하자 학생과는 페이스북 친구를 하지 않는다는 핑계로 자신의 휴대폰으로 직접 연락하도록 피해 학생을 유도한 후, 피해 학생에게 특정부위를 노출한 사진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학생이 그와 거리를 두려 하자 자살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지속하였다. 이 사건은 사정을 아는 피해 학생 친구의 부모가 학교 측에 연락을 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버클리가 학생을 성적으로 정신적으로 학대한 것이 법정에서 유죄로 판명 되었음에도 교원 징계 위원회는 그가 해당 학생과 직접적인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의 교원 면허를 취소하지 않아 결국 그에 대한 징계는 해당 학교에서 해고 및 교원 자격 임시 정지 처분(24개월)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 이렇게 성폭력을 규율하는 법률이 전반적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성폭력을 매우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비판은 다른 분야에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예컨대 의료현장에서의 성폭력-주로 의사가 환자에게 성폭력을 저지르는 경우-을 규율하는 법안Protecting Patients Acts Bill 37 또한 가해 의사의 면허 자동 취소 사유를 성교penetration, 마스터베이션, 구강성교에 제한하고 있었는데, 때문에 많은 의사들이 환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르고도 의사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에 2017년 주정부는 해당 법률을 개정하여 성적 접촉sexual touching 및 더듬기groping까지를 의사 면허 정지 사유에 포함시켰다.

참고자료

- The Star, Ontario to pull teaching licenses from sexual abusers, <https://www.thestar.com/politics/provincial/2018/10/25/ontario-to-pull-teaching-licences-from-sexual-abusers.html>
- The Star, Sexually touching a student will now cost Ontario teachers their jobs Legislative Assembly of Ontario, Bill 48, Safe and Supportive Classrooms Act, 2018, <https://www.ola.org/en/legislative-business/bills/parliament-42/session-1/bill-48>
- Ontario, Ontario Continues to Keep Students Safer to Provide better Learning, <https://news.ontario.ca/edu/en/2018/10/ontario-continues-to-keep-students-safer-to-provide-better-learning.html>

- ▶ 같은 맥락에서 올해 초 자유당 정부가 교원 면허 박탈에 해당하는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성적 접촉Sexual touching까지 법률에 명시하는 데는 도달하였으나, 신체접촉을 동반하지 않는 성폭력 또한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주는데 버클리와의 같은 가해자들에게 교편을 잡게 허락하는 것이 안전한 교육현장을 만드는데 장애가 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 ▶ 이번에 주정부가 발의한 안전한 교실 지원 법Safe and Support Classrooms Act, Bill 48은 규율 대상이 되는 위법적인 성적 행위를 “성적 학대sexual abuse”로 넓게 규정하면서 신체적 접촉을 동반하지 않은 성폭력 까지도 면허 정지 사유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음란 문자와 사진 등을 요구한 리차드 버클리의 행위는 자동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또한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노골적인 성적 농담을 하는 등의 행위 또한 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초중고 교사와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등이 해당 법률의 규율 대상이 되며, 가해자가 면허가 박탈된 경우 5년 후 교원 면허를 재신청할 자격은 주어지나 면허가 재발급된다는 보장은 없다.